

품목분류
CASE 3 **핀치 볼트 요크**

판정번호
N359979



물품 정보

쟁점 HS

용도

- 양측면에 이어홀이 있는 U자형 요크
- 유니버설 조인트의 구성 부품

제 7326 호

철강제 제품

수입

- 완성품 및 미완성품의 두 가지 형태로 수입
- 미완성품은 추가적인 기계 가공을 거쳐 완성품으로 제조 필요

제 8483 호

전동축·기어·샤프트커플링
(유니버설 조인트 포함)

CBP 판단

- 미완성품이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경우 완성품과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(통칙 제2호 가목)
- 본 사례의 미완성품은 ① 수입 시점에 이미 완성된 **요크의 형상**을 갖추고 있으며, ② **완성품으로 제조하기 위한 용도** 외에는 사용 불가

미국 HS-CODE 결정

8483.90

미완성품은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음

- 요크(미완성품 포함)은 유니버설 조인트의 구성 부품으로 **유니버설 조인트 부분품** 구동축 연결 및 고정 역할 수행

제8483호(전동축 등)의 부분품 소호로 분류